

“파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”에 대한 검토의견

□ 검토의견

-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동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.

동 조례는 상위법령에 불일치한 조항과 공개대상정보 및 공개청구권자 규정 등은 상위법령보다 과다하게 규제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.

- 다만,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단서규정에서 정보공개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부분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

- 이에 따라 동 회기에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동 폐지조례안은 법령상 적합하고 내용적으로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됨